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(최기상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4651

발의연월일: 2020. 10. 26.

발 의 자:최기상·백혜련·김남국

김용민 · 김종민 · 박범계

박주민 · 소병철 · 송기헌

신동근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「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의 시행에 따라 몰수의 이해관계인에 대한 고지 등 관련 절차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추가 규정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검사가 청구하는 사건의 재판 관할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대응하는 법원으로 확대하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원활한 직무 수행을 도모하고자 함(안 제1 2조제2항, 안 제23조제3항 및 제43조제3항).

법률 제 호

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
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12조제2항 중 "검찰청"을 "검찰청 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"로 한 다.

제23조제3항 중 "하여야 한다"를 "하여야 하고,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소속된 검사의 경우에는 그에 대응하는 법원의 판사에게 하여야한다"로 하고, 같은 조 제5항 단서 중 "지청"을 "그 지청,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"로 한다.

제43조제3항 후단 중 "검찰청"을 "검찰청 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"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2조(고지) ① (생 략)	제12조(고지) ① (현행과 같음)
②검사는 제3자의 소재를 알	2
수 없거나 그 밖의 사유로 제1	
항의 고지를 할 수 없을 때에	
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관보	
나 일간신문에 게재하고 <u>검찰</u>	검찰
<u>청</u> 게시장에 14일간 게시하여	청 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
공고하여야 한다.	<u>.</u>
③ (생 략)	③ (현행과 같음)
제23조(기소 전 몰수보전명령)	제23조(기소 전 몰수보전명령)
① · ② (생 략)	①·② (현행과 같음)
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는	3
청구하는 검사가 소속하는 지	
방검찰청 또는 지청 소재지를	
관할하는 지방법원 또는 지원	
의 판사에게 <u>하여야 한다</u> .	<u>하여야 하고, 고위공직</u>
	자범죄수사처에 소속된 검사의
	경우에는 그에 대응하는 법원
	의 판사에게 하여야 한다.
④ (생 략)	④ (현행과 같음)
⑤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	⑤
몰수보전 후 공소를 제기한 때	
에는 그 요지를 몰수보전명령	
을 받은 자(피고인을 제외한	

다)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 다만, 그 사람의 소재가 불명하거나 그 밖의 이유로 통지할수 없을 때에는 통지에 갈음하여 그 요지를 관할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게시장에 7일간게시하여 공고하여야 한다.

제43조(추징보전명령의 집행) ① 7 ·② (생 략)

③추징보전명령의 집행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「민사집행법」 그 밖에 가압류집행의 절차에 관한 법령의 규정을 준용한다. 이 경우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가압류명령을 발한 법원이 가압류 집행법원으로서 관할하도록 되어 있는 가압류의 집행에 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발한 검사가 소속하는 <u>검찰청</u>에 대응하는 법원이 관할한다.

•
그 지청, 고위공직자범
<u> 죄수사처</u>
제43조(추징보전명령의 집행) ①
• ② (현행과 같음)
3
검찰청 또는 고위공
<u> </u>